| PSPD_CI-BIG_01_gray_2.png | 정책자료 |
| --- | --- |
| 발행일 2024. 3. 18. | |

| **22대 총선 정책과제**  **- 한국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 극복 위한 20개 정책과제**  **-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할 6대 과제** |
| --- |

# 목차

[목차 2](#_umg6uev7n9v5)

[**들어가며 3**](#_pbtoxklkjnlp)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과제 5**](#_fr710hdds32l)

[마무리과제1.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6](#_xklib1nnlcfo)

[마무리과제2.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7](#_gwtvebh3g0f1)

[마무리과제3.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8](#_9tfu9wsfsldz)

[마무리과제4. 가맹점주·중소기업 단체협상 요구권 보장법 개정 9](#_xtaeo25q6isr)

[마무리과제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10](#_sy5lffgantmr)

[마무리과제6.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외압 국정조사 & 특검법 통과 11](#_bgzb82evrkbx)

[**I. 민주주의 위기 12**](#_yb2hgjf4kggi)

[정책과제1.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 견제 입법 13](#_avabmlpruxrj)

[정책과제2. 다당제·연합정치 가능케 하는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 15](#_nklrnqqfvd83)

[정책과제3.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17](#_4dei3kn191im)

[정책과제4. 검찰권한 분산 및 권력기관 견제균형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19](#_edajxivtouol)

[**II. 한반도 전쟁 위기 21**](#_9s2at0kmmwbc)

[정책과제5.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실현 위한 조치 22](#_f4ry8k9gdr5)

[정책과제6. 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 및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 24](#_5r614n7fprb0)

[정책과제7. 군비축소와 국방개혁 26](#_7ickn11idf42)

[**III. 저출생·고령화 위기 29**](#_vhfk32kv0pyu)

[정책과제8. 한국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한 돌봄 공공성 강화 30](#_ovnga63f2mae)

[정책과제9.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3](#_mmn9xeh5uymx)

[정책과제10. 주거 불안 해소하고 주거비 부담 낮추는 주거 정책 35](#_m3mjgs69jp05)

[정책과제11. 지역소멸문제 해결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37](#_3vtdx0sk2jjf)

[**IV. 민생과 안전 위기 38**](#_df1ds2es9iab)

[정책과제12. 복합 위기 대응 위한 소득보장 강화 39](#_3yfwu42m36ox)

[정책과제13. 과잉대출, 통신비 등 가계부담 완화 41](#_4m3lgny2lza4)

[정책과제14. 재벌대기업과 플랫폼에 시달리는 골목상권 살리기 43](#_7mr88sf09fah)

[정책과제15. 자산불평등 완화 위한 부자감세 철회와 공평과세 실현 44](#_2vihk2lxxy5v)

[정책과제16. 노동자 권리 보장과 노동안전 강화 47](#_mu707168tgri)

[**V. 기후위기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위기 49**](#_iqz6tldk38o0)

[정책과제17.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방지 50](#_2whpd577qcrc)

[정책과제18. AI 규제 위한 시민대안 입법 52](#_17zncbc4mat0)

[정책과제19.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책임 및 거버넌스 강화 53](#_r9v2f6wkb00m)

[정책과제20. 공공중심 에너지 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 56](#_tkyanz5q8n6r)

# 들어가며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앞두고 거대양당은 또 다시 위헌적인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역구 의석을 254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46석으로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했습니다. 서로 유리한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으려 해 47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또 다시 1석 줄여 부산과 전북 지역구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병립형 선거제로의 회귀를 저울질하더니 끝내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는 꼼수를 자행한 것입니다.
* 선거제 개혁, 정치 개혁을 외치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유권자들은 정책 실종 상황에서 깜깜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에 더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한 위기들이 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머리를 맞대야 할 여야는 상대방에 대한 혐오와 비난을 총선 전략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 총선을 앞두고 지역을 순회하며 막개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폭등한 물가에 위태로운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뒷전이고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각종 선심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자리를 스무차례 가까이 연이어 개최하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됩니다. 세수가 줄면서 재정 적자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감세 정책과 대규모 개발 정책을 함께 내놓고 정작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친 것인지조차 의문스러운 정책도 다수입니다.
* 2024년 현재 한국 사회는 부자 감세, 긴축재정, 물가폭등, 저임금과 내수경기 위축까지 극심한 민생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시한 폭탄처럼 곧 불어닥칠 사회 구조적 위기도 점차 현실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심화, 기후위기, 디지털전환에 따른 위기 등 각종 위기들이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요인들로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정당들의 행보는 단편적인 대응에 머물러 있거나 구조적, 근본적 문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보고서 <22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합니다.
*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로 참여연대는 **△민주주의 위기, △한반도 전쟁 위기, △저출생고령화 위기, △민생과 안전 위기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위기**를 꼽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 사면권, 재의요구권 등 권한을 오남용하고 있고, 정권에 비판적인 타 정치세력이나 언론을 억압하는 데에 수사와 소송 등 권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책적 진전을 이뤘던 많은 것들이 후퇴하고 퇴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조차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 남용을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근본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9.19 남북군사합의 무력화 이후 접경지역에서는 언제 무력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정한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사회 각계의 분석과 진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응은 이에 못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는 한국사회의 복합적인 요인들의 결과**로 한 두개 대책으로는 지금의 속도와 파급효과를 멈추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일자리 중심 대책이 놓치고 있는 돌봄, 주거, 공공의료, 지역균형발전 등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득 단절로 인한 생계 위협, 천문학적 가계부채,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으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 생존권의 위협, 사고와 과로로 위협받는 노동현장 등 **시민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대안**도 제안했습니다.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적 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 이 외에도 총선을 준비하는 각 원내 정당에 **21대 국회가 폐회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도 제안**합니다. 우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비롯해,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더욱 절실해진 생명안전기본법을 꼽았습니다.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사와의 불공정 갑질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중소상인 단체협상 요구권 보장법, 입점 업체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규제법 제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및 특검법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합니다.
* 선거는 우리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정치와 정책이 토론되어야 하는 장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한국사회 위기와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정당이 어떤 정책과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 알기 어려울 만큼 정책 경쟁은 뒷전입니다. 약 이십여일 남은 기간만이라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는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 

# 

# 

# 

#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과제

# 

첫 단추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각 정당은 21대 국회에서 논의해 온 중요 법안들에 대한

입법의 책임을 마지막까지 다해야 합니다.

국회 내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고

시민사회의 요구와 지지가 큰 6개 법안(의안)의 처리를 촉구합니다.

# 마무리과제1.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의원 183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함.
*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많음. 10만 이상의 인파를 예상하고도 아무런 예방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이유, 참사 현장에서 11통의 112 신고 전화가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살한 이유, 교통 통제를 비롯해 구조 활동이 늦어진 이유 등이 대표적임. 그럼에도 정부는 ‘군중유체화’ 현상이 참사의 원인이라는 경찰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들어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고, 특히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기소되었으므로 책임자 처벌도 사법적 절차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기소만으로는 참사의 예방, 대비, 대응, 수습 전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한 이유를 밝힐 수 없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데도 한계가 큼.
* 이러한 이유로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왔으나, 여당은 위원장 추천권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들어 협상을 결렬시키고 표결에 불참함.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함. 이는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강조한 것이기도 함.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현재 국회로 돌아온 특별법에 대해 여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숙고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즉시 공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1. **주요 과제**
2.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함.

1. **참여연대 담당 부서: 정책기획국 (02-723-0808)**

# 마무리과제2.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사회적 참사는 계속되고 있음.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 작년 7월 수해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모두 필요한 예방조치들을 제대로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임.
* 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임. 정부가 생명존중의 가치를 우선하여 정책과 제도를 마련·운영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면 매번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야 하는 일도 없을 것임.
* 재난안전기본법이나 재해구호법 등이 있으나 이들 법률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함. 현행 재난안전기본법은 재난 발생시 정부의 대처방안만 담고 있을 뿐임. 시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위험에 대한 알권리를 포함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상임위에 상정만 된 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방치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해당 법안의 집중적인 심의를 통해 더 이상 참사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함.

1. **주요 과제**
2.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 피해자의 권리로 안전권을 규정하고, 구조받을 권리,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 등 재난 피해자들의 권리를 분명하게 제시.
* 안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안전기준의 통합적 관리, 안전영향 분석 및 평가 등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평가 제도를 도입함.
*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면, 그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함.
* 위험에 대한 알권리 명시. 진실규명에서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 참여 보장함.

1. **참여연대 담당 부서: 정책기획국 (02-723-0808)**

# 마무리과제3.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6/1)된 이후 약 1만 3천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진 반쪽짜리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6개월마다 보완하기로 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다가구 매입, 신탁주택 전세임대주택 같은 땜질식 대책,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내놓고 있음.
* 이번 총선에서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특별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대책이 공약으로 제시되어야 함. 아울러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키운 임대차 제도, 무분별한 전세대출, 허술한 보증보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또한 중요함.

1. **주요 과제**
2. **임차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 도입 및 선순위 채권 매입**

* 공공이 채권을 매입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후순위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함.

1. **누수, 단전, 단수, 건물 파손 등 관리가 필요한 피해주택 지원**

*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주택의 누수, 단전, 단수, 건물 파손 등을 방치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서, 피해 주택 관리 및 지원 방안 마련을 법에 규정해야 함.

1. **다가구, 불법주택 등 피해주택 공공매입 확대**

* 특별법 제정 후 8개월이 경과했지만, LH 공공매입은 단 1건에 불과함. 공공매입 방안이 피해자들에게 실효성을 얻으려면 다가구, 불법건축물 등 매입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함.

1. **사각지대 없도록 피해자 인정, 차별적 지원 해소**

* ‘다수 피해자’, ‘임대인 기망의도’ 등 피해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로 인정 받아도 소득, 보증금, 국적 등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1. **참여연대 담당 부서: 민생희망본부 (02-723-5202)**

# 마무리과제4. 가맹점주·중소기업 단체협상 요구권 보장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13년 남양유업 사건 이후 가맹· 대리점, 하도급 분야의 갑질, 불공정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20대 21대 국회를 거치면서 다양한 불공정 행위 유형과 금지 규정들이 명문화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가맹·대리점 본사와 점주, 원청·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법제도가 규율하지 못하는 불공정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게다가 제재 중심의 법제도로 인해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구제까지는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고 사후구제로서 한계가 큼.
* 이에 공정위 신고 전에 가맹·대리점·하청업체가 거래조건이나 불공정 계약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 및 원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사전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함. 중소자영업자단체, 중소기업 단체 및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입법운동으로 가맹·대리점·하청업체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사와 원청이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각각 21대 국회 정무위와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사위 통과가 좌절됨.
*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대기업 및 원청을 대상으로 계약상 ‘을’의 지위에 있는 가맹점·중소기업이 불공정 행위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만큼 이제는 가맹대리점 본사와 가맹점주 및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협의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어야 함.

1. **주요과제**
2. **가맹점·중소기업의 단체 협상권 보장 및 강화 제도화**

* 현재 가맹점은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본사의 갑질, 불공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적 대응권을 보장해야함.
* 현행법상 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본사가 응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함.

1.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마무리과제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 고착효과, 전환 비용 등의 특성상 일부 플랫폼에 의한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플랫폼들이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상품/서비스와 자사 상품/서비스를 차별 취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함. 코로나 사태 이후 디지털시장 내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본격적인 규제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발맞춰 21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이 다수 발의되었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 문제는 디지털 시장 내 종사하는 중소상인·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앱마켓 수수료, OTT 서비스 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침. 따라서 특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독과점을 막고, 후속 신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출해 경쟁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하는만큼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함.

1. **주요과제**
2. **각 디지털 시장 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는 시장지배적플랫폼의 사전지정**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의 핵심은 소수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게이트키퍼’로서 디지털시장 구조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상으로는 시장획정과 사후규제에 많은 시간과 조사절차가 필요함. 이에 시의성 있는 규제와 피해구제가 어려운만큼 시가총액 30조원, 연평균 매출 3조원, 월 평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이거나 이용사업자 수가 5만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도록 함.

1. **독점 플랫폼의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 자사우대, 끼워팔기, 데이터 이동·접근 등 시장 독과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명시하고 금지함.

**3.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마무리과제6.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외압 국정조사 & 특검법 통과

1. **현황과 문제점**

*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업 중 해병대 1사단 채 일병이 사망 후, 돌연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이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됨. 박정훈 대령은 사건의 경찰 이첩 전 법무관리관 등의 수사 외압과 정당한 경찰 이첩 과정을 국방부장관이 번복했다는 등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함. 해병대 수사단에 ‘사단장 빼라’는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후 시행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는 ‘사단장 제외’ 결과로 나타남.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문건이 드러나는 등 수사 외압 의혹이 커지고 있어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의 배경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누구인지, 경북경찰청이 아무 근거도 없이 군검찰에 사건기록을 인계한 배경은 무엇인지 등 진상이 규명되어야 함. 현재 국회에는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외압 국정조사⸥ 국민동의청원이 계류중임. 21대 국회는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국정조사를 반드시 마무리해야 함.
* 이 사건과 관련 참여연대와 민변은 2023년 10월 윤석열 대통령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음. 하지만 윤 대통령은 주요 피의자중 한 명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음. 이종섭 전 장관은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되었지만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여 2024년 3월 10일 신임장도 받지않고 출국해 범인의 해외도피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공수처 수사, 국정조사와 별개로 이미 발의된 [해병대 수사외압 특검법](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T3T0R9S0Q7P0P9L0L0K4L2J7J6H0)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

1. **주요 과제**
2.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외압 국정조사**

* 대통령 및 대통령실(국가안보실 등) 인사의 수사 외압 지시나 관여
* 7월 31일을 전후해 이종섭 국방부장관, 신범철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의 관련 행적
* 사건기록 경북경찰청 이첩 후 국방부 재반출 과정
*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수괴죄’ 수사 및 보복행위 지시 및 입막음 수사 실행 과정

1.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외압 특검법 처리**
2. **참여연대 담당 부서: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 

# 

# 

# 

# I. 민주주의 위기

#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지난 7일 공개한 연례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https://v-dem.net/publications/democracy-reports/)*’에서 “그간 회복세를 보이던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 10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0.60점을 받아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다. 2019년 0.78점(18위), 2020~2021년 0.79점(17위) 2022년 0.73점(28위)에서 점수와 순위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폐쇄적인 독재국가’, 1에 가까울수록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다.* [*한겨레신문. 2024.3.11. 기사*](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31632.html)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 사면권,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에 부여된 여러 권한을 오남용하고 시행령 통치로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조사 수사권한을 활용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언론인들에 대해 입막음 소송도 서슴지 않습니다.

정치적 비판과 언로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적 징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정책과제1.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 견제 입법

1. **현황과 문제점**

*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우회하여 적극적인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음. 법률에 위임없이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경찰국 신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국회의 검찰청법 개정에 맞서 검찰과 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검찰청법 시행령, 수사준칙 등 시행령을 개정하여 진행함. 집시법 시행령 개정도 강행했음.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국회를 우회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극대화하고 있음. 행정부가 위임입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활용하는 것은 행정부 우위의 한국사회의 오래된 문제임. 하지만 법률에서 위임받지 않거나 모법 취지에 반하는 위임입법의 제개정은 윤석열 정부에서 심해지고 있음.
* 현행 「국회법」 제98조의2는 위임입법의 국회 보고 의무, 국회의 의견 제출권(상임위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본회의 의결 후 검토 및 처리의견을 정부에 송부), 정부의 처리결과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견 제출권이 실제 행사되는 경우는 드묾.
*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주도로 통과된 쟁점법률(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에 거의 예외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이태원특별법 역시 국민적 지지가 높았음에도 정쟁 유발 법안이라고 거부함. 대통령의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은 헌법에서 부여한 권리이지만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함.
* 윤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직자들을 임기 중임에도 여러 이유를 들어 해임하거나 해촉함. ‘검사 몰입 인사’도 문제임. 정치적 중립성이 없어 자격 없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무리해 임명했다가 국회가 탄핵에 나서자 사표를 받고, 이번에는 방송 관련 경력도 없는 김홍일 전 검사를 국민권익위원장 임기 중에 있었음에도 돌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을 강행함. 가장 최근에는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하여 ‘해외도피’를 위한 인사라는 비판을 받음.
*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만 스무차례 가량 됨.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면권은 대통령의 한법상 고유 권한이나, 제왕적 권력 행사의 상징이기도 함.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로 사법권을 무너뜨려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수사해 기소한 이명박, 이재용 등을 사면함. 최근에는 국정농단에 연루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상고를 포기하고 일주일 만에 사면을 받음. ‘약속사면’으로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비등하였음.

1. **주요 과제**
2. **위임입법(시행령 등)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 및 별도의 법률 제정**

* 「국회법」 제98조의2를 강화해 국회가 위임입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있거나 위법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수정을 요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회법」 제98조의2만으로는 광범위한 위임위법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위임입법 통제를 위해 심사 범위, 대상, 절차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가칭\_위임입법심사법)의 제정을 추진해야 함.

1.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

*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한정할 필요.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 기업범죄 등은 사면을 제한하고,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를 사면하는 소위 ‘셀프 사면’을 금지하도록 함. 형기의 2/3 이상을 채우지 않은 자 등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자는 사면을 금지함.
* 사면심사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사면 결정에 앞서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과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국회 동의 절차를 신설해야 함.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국회와 대법원장이 참여하도록 확대하고,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함.

1. **대통령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에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현행 10일 이내에서, 10일 이상 3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하도록 변경함.
* 국회가 인사청문회 개최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과 관련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도록 함.

1.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
2. **참여연대 담당 부서: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 

# 정책과제2. 다당제·연합정치 가능케 하는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정당들은 정책이나 공약으로 경쟁하기 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혐오와 비난을 총선 전략으로 택하고 있음. 국회의원수 축소와 같은 정치 혐오에 기반한 공약도 제출되고 있는 상황임.
* 선거제 협상 결과 가까스로 준연동형비례제가 유지되었지만 두 거대정당은 야합해 비례의석을 지역구 의석 확보를 위해 축소시킴. 국민의힘은 앞장서서 위성 정당을 창당해 소수정당에게 돌아갈 의석을 가져가는 반칙을 또다시 감행함. 민주당은 준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살리겠다며 협상을 통해 소수정당에게 일부 의석을 나눠주는 연합정치를 시도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조치로 의석수 극대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녹색당과 정의당은 함께 녹색정의당을 창당했는데 새로운 시도이지만 선거용으로 급조된 정당이란 비판이 제기됨.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등 선거를 앞두고 탈당한 세력이 중심이되어 창당하거나 조국혁신당처럼 정치권 외곽에서 있던 인사들이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정당들도 등장하고 있음. 현재의 정당과 정치인들의 총선 승리를 위한 다양한 시도는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으로 평가받을 일이지만, 위성정당의 경우 위헌 탈법 논란이 있고 유권자의 혼란을 부르는 등 폐해 등도 만만치 않음.
* 앞으로의 정치개혁의 방향은 한국사회의 다양성이 국회 의석 구성에 반영되는 다당제 정치와 다양한 정치실험과 정책에 기반한 합종연횡을 가능하게 하는 연합정치의 토대를 만드는 방향이 되어야 함. 공직선거법은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라도 당선될 수 있어,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안정성이 약함. 프랑스, 독일 등 여러나라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있음.
*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103조 등 여러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음. 그러나 국회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기보다는 매우 소극적인 법 개정으로 매우 제한적인 개선에 머무름.

1. **주요과제**
2. **민주적 정당성 확대와 연합정치를 위한 결선투표제 도입**

*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정책에 기반한 연합정치가 가능하도록 결선투표제를 제도화해야 함. 자치단체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함.

1.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 임기만료로 진행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는 것을 의무화 함.
*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대비 총후보자수의 비율)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지역구총수 대비 총후보자수의 비율)의 30% 이상이 되도록 함.
* 이러한 의무추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후보자 등록을 수리할 수 없게하거나 무효화 함.

1. **생활밀착형 정치 보장하는 ‘지역정당’ 설립 가능토록 정당법 개정**

* 생활밀착형 정치를 위해 지역정당 설립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
* 수도에 중앙당을 두도록 하는 정당 설립 요건을 삭제하여 풀뿌리 정치를 위한 지역기반 정당설립을 보장함(제3조, 제4조, 제17조 등 개정).
* 1개 시도에서 500명 이상 당원을 모집하면 정당 설립 가능하도록 함.

1. **비례성이 증진된 선거제도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석수 확대**

*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 도입.
* 의석수 확대(360석까지,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수 산정)와 비례대표 비율 명문화, 확대(최소 2:1).

1.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 유권자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악법 조항 폐지 및 규제중심에서 선거운동 보장 중심으로 선거법 체계 개편.

1. **불법 정치자금 감시와 근절, 투명성을 확대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 공개 고액기부자의 기준액(현행 300만 원)을 연간 120만 원 이상으로 하향하고, 고액기부자의 직위, 소속기관의 대표자명 등을 신고하도록 함(제40조 등 개정).
*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역을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개함(제42조 등 개정).

1. **참여연대 담당 부서: 의정감시센터 (02-723-0666)**

# 정책과제3.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윤석열 정부 들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가 늘어남. 정부는 불법집회 엄정대응을 경찰에 요구하고, 경찰은 집회시위 진압 기동훈련을 재개하는가 하면, 대법원 인근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야간 문화제를 강제 해산하고, 1인 시위 중인 노조원이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얼굴을 맞아 부상을 당하기도 했음.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연대의 지하철 선전전을 막기 위해 억지로 집시법의 8조 5항을 적용하려고 시도하기도 함.
*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로 대통령실 인근을 추가하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기도 하고,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법통과가 어려워지자 시행령을 개정해 이태원로를 경찰이 자의적 해석에 따라 집회 제한 및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1대 국회 입법 현황 역시 집회의 자유를 보호, 확장하기보다는 제한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됨.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야간집회시위를 다시 금지하고, 1인 시위를 규제하며, 이미 일반시민으로 돌아간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혐오표현, 명예훼손 등의 내용 집회 금지, 심지어 꽹과리 사용 사전 허가까지 집회의 장소는 물론, 방법 및 시간까지 제한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됨. 이는 헌법에서 위임받은 입법권을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행사하기보다 오히려 제한하고 규제하기 위해 오용하는 것임. 22대 국회에는 이와 같은 기본권을 후퇴시키거나 침해하는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집회의 자유를 확대 보장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함.
* 대통령의 과거 공직시절의 비위의혹,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권한없는 역술인의 관여 의혹, 한동훈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제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마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 당하고 있음. 특히 명예훼손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가 고발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는 형법의 명예훼손죄가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임.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것은 국민의 감시 대상이라는 법원의 일관된 판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명예훼손 고소고발이 빈번한 것은,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 인적, 물적,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를 겪거나 본 사람들에게 위축효과를 주기 때문임. 겁주기, 입막음용 고소고발이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음.

1. **주요 과제**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 소규모 집회 신고의무 면제**

*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집회 개최시 처벌하는 집시법 제6조, 제22조 2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 50인 이하 등 일정 정도의 규모 이하는 집회 신고의무 부과를 면제하도록 함.

1. **주요기관 앞 100미터 이내 절대적 집회 금지 조항 11조 개정**

*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비판, 요구 등의 목소리를 내는 대상은 주요국가기관임. 그런데 현행 집시법은 국회, 법원, 대통령관저, 외교공관 등 주요기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그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 등에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에 한해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민주사회의 필수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제한할 수 있어야 함.

1. **교통소통 명분으로 경찰이 자의적 집회 금지할 수 있도록 한 12조 개정**

* 국가인권위는 2008년 이미, 집회를 방치할 경우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도시 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금지통고를 하도록 경찰에 권고한 바 있음. 신고제는 경찰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를 위해 도로상황, 인구밀집 및 이동 등을 판단하여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협력 의무를 다하라는 취지임. 이를 무시하는 경찰의 집회관리 방식은 문제가 있음.

1. **고위공직자 비판 못하도록 막는 명예훼손죄 개정**

* 기업의 상품 · 서비스에 대한 품평, 공적사안에 대한 의견 개진, 국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비판 등 사실에 기반한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폐지함.
* 현행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함.

1. **참여연대 담당 부서: 공익법센터 (02-723-0666)**

# 

# 정책과제4. 검찰권한 분산 및 권력기관 견제균형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1. **현황과 문제점**

*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과 2022년 5월 검찰 직접수사 축소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법무부는 ‘중요 범죄’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 입법상 미비점을 이용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함. 국회는 모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시행령 개정을 막기 위해 검찰 직접수사를 폐지하고, 일부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한 범죄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후속 입법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함.
* 수사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고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조직적 분리와 상호 견제가 필요함. 이를 위해 검찰은 직접수사 폐지 및 기소 중심 업무를, 기존 경찰은 수사 이외에 경비, 보안, 정보 등 다양한 경찰 기능을 하고,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주요 업무로 하는 조직(가칭 ‘국가수사청’)을 신설해야 함.
* 검찰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함. 검찰권력을 일부 분산하는 수준에 머무는 개혁이 아닌 권력의 민주적 통제 원칙(주민에 의한 선출)을 도입한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함.
* 환경·재난 범죄나 공직자 범죄와 같이 직접적 피해당사자가 모호해 고소권자가 불분명하고, 주로 시민단체 등 제3자의 고발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의 경우, 경찰이 불기소 하면 이의제기가 불가능한만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다시 명문화해야 함.
*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한다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추어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 범위와 기소권의 범위를 일치시켜야 함. 또한 수사 인력 확보의 걸림돌이 되는 공수처 검사의 재임 기간 확대 및 수사관 등 수사역량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함.
* 국가경찰위원회는 그 권한과 조직이 제한되어 있어 당초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던 중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에 대한 정치적인 통제를 목적으로 하여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함. 경찰에 대한 권력의 장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하고, 위원의 3/2를 국회가 선출하도록 해야함.
*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핵심으로 한 개정 국정원법이 시행됐으나, 국정원은 시행령을 개정해 권한과 직무 범위를 확대 · 강화하고 있음. 국정원의 불법사찰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나마 처벌받은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 인사들도 대거 특별사면됨.

1. **주요 과제**
2. **검찰권 분산 위한 검찰청법 개정 및 국가수사청 설치**

* 검찰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등 검찰권 분산을 위해 검찰 직접수사인력(검찰수사관)을 떼어내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함. 기존 검찰과 경찰이 분산해 담당하던 광역 중요 범죄 수사를 담당할 독립된 국가수사청 설치법을 제정함.
* 검찰 직접수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일부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한 범죄는 형법 조항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를 개정함.
* 지방검사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방검사장이 관할구역의 공소업무와 지역 자치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주관하게 하고, 이를 통해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함.
*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지방검사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이를 위해 검찰청법 제21조, 제34조 1항 개정 및 절차 규정을 신설함.

1. **사회적 범죄 사건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복원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 공직자 직무 관련 범죄, 환경·재난범죄 등 피해당사자가 특정되기 모호한 사회적 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 불기소 결정 시 제3자인 사건관계인(고발인)의 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권을 복원, 다시 부여하도록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를 재개정함.

1. **경찰법 개정**

*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하도록 경찰법7조 개정, 위원 3/2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함.
* 경찰법 제11조, 제11조의2 등을 개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에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용, 국가경찰공무원의 부패방지 및 비위 감독, 인사, 인권침해 감독 등을 소관 사무로 포함함. 심의⋅의결 사항으로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 및 해임건의, 국가경찰사무 관련 법령⋅규칙⋅준칙 등의 제⋅개정 등을 포함함.

1. **직무 권한과 인력 확충 규정 위한 공수처법 개정**

* 공수처의 직무 권한과 관련해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 전부에 대해 기소 및 공소 유지 가능하도록 공수처법 제3조 1항 등 개정.
*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 정원, 행정직원 정원의 확대 및 수사처 차장과 검사의 연임을 제한 완화하도록 공수처법 제7조와 제8조 등 개정.

1.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 국정원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 국정원의 각 직무와 관련한 개별 법률의 입법을 통해 민주적 통제 체계 구축.
* 국정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특별법 제정과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1. **참여연대 담당 부서: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 

# 

# 

# 

# II. 한반도 전쟁 위기

#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 보다 첨예합니다.  
불안한 휴전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전쟁의 위기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력충돌을 예방할 안전핀 역할을 해왔던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된 후, 접경지역에서는 언제 무력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북 대화가 시작된 이래 이렇게 오랜 시간 대화가 단절된 것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이와중에 한미와 북한이 서로를 향한 핵 선제 공격 전략을 공표하고 실제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 상황이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의 정책변화 가능성은 요원하고, 극단적인 진영 정치 속에서  
국회는 가장 보편적 의제인 평화를 촉구하기 위한 합의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 무력충돌을 예방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남,북,미 모두 군사행동을 멈추고 대화채널을 복원해야 합니다.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초정파적 협력이 절실합니다.

# 

# 정책과제5.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실현 위한 조치

1. **현황과 문제점**

*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남북·북미 간 대화 채널은 모두 끊긴 채,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며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대화채널 조차 가동되지 않는다는 것임. 남북 대화가 시작된 이래 이렇게 오랜 기간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일이 없었음.
* 크고 작은 연합훈련이 쉴 새 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 역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이어가고 있음. 위기를 관리하고 무력 충돌을 예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나 평화를 위한 현실적 해법은 전무하고, 남북 모두 서로를 위협하는 자극적인 언사와 군사행동의 강도만 높아지고 있음. 9.19 군사합의마저 무력화되어 완충 공간이 사라진 상황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사고, 오판이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음.
*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는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대규모 한미 간 군사연습과 훈련을 재개하였음.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 점령 후 안정화 작전 등을 포함하는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대표적인 대북 적대 정책 중 하나로 그동안 한반도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격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 옴.
* 한반도 풍향이 바뀌는 시기가 오면 본격적인 대북 전단 살포도 예상됨. 전단 살포는 냉전 시대부터 ‘심리전’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북한은 군사 대응까지 경고하고 있음. 헌법재판소가 비록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처벌의 과잉을 문제 삼았을 뿐 전단 살포의 문제점과 제한의 당위성은 인정하였음.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전단살포는 제한돼야 함.
* 한반도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적대정책과 무력시위는 악순환을 심화할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음. 평화공존을 위한 협상과 관계 개선만이 현실적이고 올바른 해결의 길임.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초당파적 노력이 절실하며, 남·북·미 모두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 행위와 위협을 멈추고, 무력 충돌 예방과 위기관리를 위한 대화를 재개해야 함.

1. **주요과제**
2. **남북 상호 군사 위협 행위 중단 촉구**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 남북 모두 9.19 군사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모든 군사 행위와 위협을 중단하도록 해야 함.

1. **위기관리와 무력 충돌 예방을 위한 대화 채널 마련**

* 전쟁 위기 해소와 무력 충돌 예방을 위한 남북, 북미 간 최소한의 대화 채널이 복원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함.

1. **접경지역 대북 전단 살포 제한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위협하는 전단 살포 행위는 제한해야 함. 따라서 전단살포 규제 조항 자체를 삭제하려는 정부의 조치는 부적절하며, 과잉처벌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되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전단 살포 단속과 제한을 적극 시행토록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을 개정해야 함.

1.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 대화와 군사행동은 양립할 수 없음. 군사적·경제적 우위에 있는 한미 정부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 대화의 여건을 마련하도록 해야 함.

1. **전쟁위기 해소를 위한 초정파 여야 협의체 구성**

* 윤석열 정부가 남북 대화를 재개할 의지가 전혀 없이 군사적으로 강경 기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만큼은 전쟁위기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위의 조치들을 행정부에 적극 요구하고 견제·견인해야 함. 이를 위해 초정파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 제시하고 민간외교 차원의 시도도 모색해야 함.

1. **참여연대 담당 부서: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정책과제6. 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 및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

1. **현황과 문제점**

*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북중러 진영 대결도 구조화되고 있음.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군사협력 추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 미국 중심의 진영에 편승하며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음.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전세계적인 군비 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현명한 선택이 아니며, 동아시아 냉전 구조를 강화하고 이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을 무시한 졸속 해법을 일방적으로 발표함. 캠프데이비드 선언 이후 한미일 3국은 준동맹 수준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한미일 연합 합동 훈련을 정례화하고,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음. 그러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는 북한의 위협을 해결할 수 없으며 군비 경쟁의 악순환만 불러온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시간이 충분히 증명하고 있음. 오히려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결 구도를 심화하여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한반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임. 더불어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일임.
* 한편,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인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지 못하면 국방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나 독립적인 군사 전략 수립은 불가능하며, 군사적 주도권은 계속 미국이 가져갈 수밖에 없음. 그러나 한국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얽매여 전작권을 환수하지 못해옴.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 자체가 모호하고 안보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오히려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는 구실만 되고 있음.

1. **주요 과제**
2. **주변국과의 균형 협력 외교**

* 맹목적인 한미동맹에 치우진 진영 외교가 아니라,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균형 외교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하도록 촉구해야 함.

1.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

*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종료하도록 감시해야 함.
*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등의 사안에 분명히 반대입장을 표명하도록 정부에 촉구해야 함.

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 미국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식을 다시 협상하여 조건부 전환이라는 기준과 검증 방식을 전면 수정하고, 전작권을 조건 없이 환수할 계획을 마련토록 촉구해야 함.
* 전작권 환수 뒤 한미연합사는 해체하고 한국군은 한국이 단독으로 지휘할 수 있어야 함.

1. **한일 과거사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졸속 해법을 철회토록 촉구해야 함.
* 강제동원 및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가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함.

1. **참여연대 담당 부서: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 정책과제7. 군비축소와 국방개혁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한국군 상비 병력은 50만 명으로, 육군 병력 위주의 대군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현재의 병력 규모와 18개월의 복무기간은 앞으로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 병역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나 윤석열 정부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통해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병역 제도 개편 방안은 없는 상황임. 병력 규모는 현실적인 위협 분석과 실현 가능한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추산되어야 하며, 군의 목표를 북한 공격이나 점령이 아닌 방어 위주로 분명히 정립하여 상비 병력을 감축하고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함.
* 한국의 국방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2024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약 59.4 조원이며,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국방예산으로 총 348.7조원을 투입할 예정임. 이 계획대로 국방비가 늘어날 경우, 2028년 국방예산은 80조 원에 달함. 한국은 군사비 지출 세계 9위(2022), 무기 수입 세계 9위 (2018~2023), GDP 대비 군사비 지출 2.1%(2022)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6배에 달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음.
*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는 등 군사적 대결 구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명분으로 킬체인 등 선제 타격 능력 확보를 포함한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고 2024년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임. 또한,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전력화,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 독자적 정보 감시정찰 능력 구비, 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구축, 한미 확장억제 강화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과 군비 증강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음.
* 한편, 한국군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자율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기 체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윤리적 기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통제 방안도 미비한 상황임. 자율살상무기로 인한 무장 충돌의 확대와 군비 경쟁, 민간인 살상 가능성, 해킹의 위험성 등에 대한 경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 시민사회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금지 목록에 자율살상무기 시스템을 추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정권을 막론하고 방위산업을 진흥하고 수출 지원 정책을 펼쳐 온 결과 현재 한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 10위(2019~2023) 국가임. 윤석열 정부는 2024년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 불로 설정하고, 수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그러나 문제는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 국가 중 다수(74%)는 분쟁 중이거나 독재 및 인권 탄압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임. 예멘 내전 곳곳에서 한국산 무기가 발견되었으며, 미얀마 민주화 시위와 스리랑카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는 데 국내산 최루탄이 사용되었음. 또한, 한국은 최근 10년(2013~2022년)간 이스라엘에 약 4700만 달러(약 630억 원)어치의 무기를 수출하는 등 한국산 무기가 팔레스타인 학살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무기 수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무기 수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

1. **주요 과제**
2. **상비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등 병역제도 개편을 위한 국방개혁법·병역법 개정**

* 상비 병력을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함. 한국군의 약 75%를 차지하는 육군 병력을 대대적으로 줄이고 숙련 장기 복무 인력인 간부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전환토록 정부에 촉구해야 함.
* 장교 수는 4만 명 수준으로 감축, 부사관은 현 13만 명 규모를 유지, 현행 의무병(징집병)은 10만 명으로 감축, 복무기간은 12개월(육군 기준)까지 단축해야 함. 장교수 감축에 맞춰 장성 수도 대폭 감축.
* 장기적인 병역 제도 개편을 위해 1년 복무 의무병 10만 명, 3년 복무 지원병(모집병) 3만 명을 함께 운용하는 징모혼합제 도입. 3년 복무 지원병(모집병)신설, 지원병은 입대 전후로 지원 가능하게 하고 희망자는 부사관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지원병 제도가 부사관 획득의 주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 여군 지원병 운영, 이후 여군 부사관 획득 구조로 이어지도록 설계하고, 여군 비율은 30%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함.

1. **국방예산 삭감과 과도한 전력 증강 계획 수정**

*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국방비를 삭감하고 과도한 전력 증강 계획을 수정토록 예산 심의를 강화해야 함. <2025~2029 국방중기계획>에 군비축소 계획이 포함되도록 해야 함.
* 선제 공격을 포함한 작전 개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한국형 3축 체계 계획은 전면 수정해야 하며, 관련 사업들도 조정해야 함.
* 한정된 자원과 예산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 예방, 저출생 고령화, 돌봄 등 실제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함.

1. **군사분야 AI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 공청회, 토론회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자율살상무기 개발과 운영에 대한 통제 방안을 수립하도록 촉구해야 함.

1. **무분별한 무기 수출 통제 방안 마련 및 무기 수출 정보 공개**

* 해당 무기가 반인도적범죄, 전쟁범죄, 국제인권법 위반 등 중대한 인권침해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경우 무기 수출은 엄격하게 통제해야 함.
*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지역에 무기를 수출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군수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함.
* 무기 수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무기 거래내역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해야 함.

1.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 

# 

# 

# III. 저출생·고령화 위기

# 

초고령화 사회에 초고속으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초저출산 추세는 2000년대 들어 더욱 가속화되어 2023년 기준 0.72(홍콩 제외 세계 최저)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를 통해 세계 최저 수준을 밑도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2050년엔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초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고용·주거·양육 불안 등을 꼽아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시인구 집중도와 주택가격, 청년고용률 등 출산 기피 요소 관련 지표들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면 출산율이 반등할 것으로 예측한 점은 주목할만 합니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사회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한 가지 처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 

# 정책과제8. 한국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한 돌봄 공공성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은 2004년 OECD 회원국 중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이래 2007년, 2012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 중임(OECD, 2023). 하지만 출산·양육 중심의 정책 대응, 비용 지원 치중, 국가 역할을 잔여적·보충적으로 제한하는 등 종합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함. 또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돌봄 수요와 일자리 요구에도 돌봄은 사적 책임으로 전가되고 돌봄 노동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영유아 돌봄, 노인 요양, 장애인 지원 등 주요 사회서비스는 민간에 맡겨 운영되어 왔고, 운영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성, 효과성 결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열악한 종사자의 처우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은 고질적인 문제임. 또한 필요와 욕구에 맞는 보건, 요양, 복지 및 일상 생활지원, 주거 등의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도입되었으나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 및 역량 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열악한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나 핵심 조항인 국공립 우선 위탁 조건이 민간 기피 기관으로 제한되는 입법이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짐. 또한 부족한 예산과 근거법의 미비로 지역별 운영에 격차도 생겨났고, 사회서비스원의 절대적인 수가 매우 부족해 민간 시설에 비해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고 있음. 일부 지자체는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거나 돌봄노동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초단기간 저임금 노동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는 등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경우에는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한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의 통폐합, 예산 삭감 등 돌봄서비스의 공적 지원을 축소하고 있음.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도입 취지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임. 시민 누구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돌봄의 공공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는 반드시 필요함.

1. **주요 과제**
2.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

*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최대한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함.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위한 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 확충 계획을 제시함.
* 기초자치단체는 분절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주민들에 대한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 또한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각종 정부보조금으로 쪼개져 있는 돌봄 관련 재정을 통합하여 활용하면서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

1. **사회서비스 분야 국공립 시설과 서비스 대폭 확충**

*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질높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50%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을 축소함. 초등돌봄 이용률을 확대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을 아동돌봄센터(안)으로 통합하여 지자체 책임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함.
*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체계적인 아동학대 보호체계를 구축함. 학대 피해 아동 보호체계 및 심리상담을 확대하고, 해외입양과 대규모 양육시설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함.
* 노인공공요양시설(시설, 재가) 기본공급률제를 도입하고, 일반 공립요양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재 50%에서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80% 수준으로 일괄 상향시켜 지역별 공립시설 설립을 촉진함.
* 장기요양 1,2등급 재가요양서비스를 시설요양 수준으로 확대하며, 최소한 하루 8시간 수준으로 확대하고, 야간서비스를 제공하여 충분한 돌봄이 실현되게 함.

1.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대와 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

* 사회서비스원이 국공립 시설을 우선 위탁 받도록 분명히 하고, 돌봄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며, 독립채산제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을 추진함.
* 돌봄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식되고, 적정한 돌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돌봄노동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임금 및 고용체계를 개선함.

1. **일⋅가정균형 정책 강화**

* 가족돌봄 등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함.
* 보호자 모두를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와 함께 임신기 및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난임치료 휴가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함. 또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상향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단절을 방지함.

1. **지역에서 적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거권 보장**

*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만 거주 가구에 대한 거주품질보장 등 적정한 주거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중앙정부 역시 지원을 병행함. 특히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지자체의 책임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함.
*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주거권을 실현하고 적합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원주택을 주거기본법, 주거약자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의 법개정을 통해 주요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에서 지역 내 지원주택 욕구 규모를 파악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주거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하고, 수준도 급지별 표준임대료 실태조사 등을 근거로 현실화시키면서, 신속한 임대료 지원을 위한 선정과정의 개편도 병행함.
* 공급자 중심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정책 및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개선함.

1. **참여연대 담당 부서: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정책과제9.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GDP대비 의료비는 9.7%로 OECD 평균을 넘어섰고,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 중임.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고, 공적부담 즉 국가가 부담하는 보건의료 재정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보니 그만큼 가계의 의료비 직접 부담이 높음.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도 증가해 2025년에는 전체 진료비 7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 절감과 누구나 아픈만큼 치료받을 수 있게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급함.
* 현재 한국의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2.6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7명에도 미치지 못함.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의사 인력의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됨. 특히 필수진료과[[1]](#footnote-0) 의료인력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대란, 응급실 뺑뺑이 등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생 2천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으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병원 확충, 지역‧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인력 배치 방안은 부재함. 반면 정부는 시장주의적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의 공공성은 약화시키는 수가 인상, 민간병원 지원확대 정책을 추진 중임.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양성·배치 정책이 필요함.
*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2022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2%(222개소),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의 9.5%에 불과[[2]](#footnote-1) 해 OECD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3]](#footnote-2) 그마저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확대와 책임강화가 필요함.
* 의료자원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되며 지역 간 의료접근성 격차가 심각한 상황임.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자 수가 2022년 기준 서울은 4.8명인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2명 수준으로[[4]](#footnote-3) 의료취약지역 응급환자의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함.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역할 강화가 필요함.
* 공공의료기관의 관리와 재정지원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유기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공공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리권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공공의료전달체계가 필요함.
*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2021년 기준 OECD 평균(74%)보다 낮은 64.5%로 2020년 보다도 0.8% 떨어짐.[[5]](#footnote-4) 민간보험 의존도가 높아지며 개인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실손보험 가입자가 약 4천만 명에(2022년 말 기준)달함.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공공의료 강화 내용은 빠져있으며, 병원, 제약사, 보험사에게 수가 인상이나 규제완화 같은 혜택을 주며 시장주의를 강화하려 하고 있음.

1. **주요 과제**
2. **의사인력 공공성 강화와 공공의대 신설**

*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지역공공의료기관 의사의무복무제 시행함.
* 간호사 1인당 입원 환자수 최저기준을 제도화함.

1. **공공병원 확대**

*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1개 이상 신설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신설 및 증축으로 기능 을 강화해 5년 안에 공공병원을 2배 이상 확충함.
* 공공병원 예산 타당성조사 면제를 법제화함.

1.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 공공의료관리기관을 신설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공공의료기관 재정지원을 제도화하고, 공공병원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함.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혼합진료 금지제도,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지불제도를 개편함.
*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미지급 없이 지원하고, 항구적으로 법제화함. 나아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30% 이상으로 인상함.
* 불필요한 비급여 수요를 부추기는 실손보험 연계판매를 금지하고, 민간의료보험 출시 전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 민간보험 통제 장치를 마련함.

1. **주치의제도 도입**

*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주치의가 환자 건강관리를 책임지도록 함.
* 일차의료를 제대로 세워 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함.

1. **참여연대 담당 부서: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정책과제10. 주거 불안 해소하고 주거비 부담 낮추는 주거 정책

1. **현황과 문제점**

*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있지만, 높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한국 사회 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실제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인 월소득대비임대료(RIR) 비율은 2021년 수도권 기준 17.8%에서 2022년 기준 18.3%로 계속해서 상승함. 광역시 등 지역 역시 14.4%에서 15%로 상승한 것이 확인됨. 따라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 불안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임.
*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있음.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 30대 청년 세대임.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집값 부양 등 주거 공공성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연 13.5만호에서 10만호로 축소하고 실제 예산도 2023년 5조1천억을 삭감했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은 후퇴한 반면 부자감세, 대출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부동산 PF대출 지원 확대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집값부양 정책은 속전속결로 추진됨.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합의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도시재정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실거주의무 3년 유예)’ 등의 규제완화 법안은 난개발, 수도권 집중 강화, 투기 조장 등의 부작용이 예상됨. 과거 뉴타운 사례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 공약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은 바 있음.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저출산·고령화·기후 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방식임.
* 이에 모두가 안전하고 부담가능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세입자 보호 강화, 재개발·재건축 공공성 강화,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등의 종합적인 주거 안정 정책을 요구함.

1. **주요 과제**
2.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삭감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연 평균 17%)을 최소한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복원.
* 공공택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 등에서는 도심내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복원.
* 윤석열 정부에서 절반으로 축소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량(문재인 정부 7만호→ 윤석열 정부 3.5만호) 복원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확대와 예산 확대

1.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 및 임대차 행정 강화**

* 집값과 전월세 가격 급등락에 따라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계약갱신 보장 횟수 확대, 신규 임대차 계약시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
* 세입자를 위한 정책 수립, 임대소득 과세 등을 위해서는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행 유예를 중단하고, 모든 전월세거래를 신고하도록 개선
*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불법건축물,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등) 이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1. **재개발·재건축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 및 정비사업 규제 강화**

*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즉 재건축부담금을 강화해 취약계층 등 주거복지 향상에 사용하도록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 정비사업의 노후도 및 안전진단 요건 강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주민동의율 상향 등 정비사업 규제 강화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확대 및 의무화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 집값 상승, 부동산 투기, 자원낭비 등을 초래하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폐지

1.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무력화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등 무분별한 주택 금융 제한 및 대출 규제완화 정책 중단, DSR 적용 확대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전면 실시, 분양주택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강화

1. **참여연대 담당 부서: 민생희망본부 (02-723-5052)**

# 

# 정책과제11. 지역소멸문제 해결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1. **현황과 문제점**

*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인구절벽 문제는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구에 달함. 인구감소는 서울 제외, 경기(가평군, 연천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등 수도권 외곽지역까지 포함된 전국적 현상임.
*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이유는 저출생에 근본적 이유가 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수도권으로 초집중되면서 지역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임.
* 인구가 줄면서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고 지방의 의료 등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그 정주여건 악화가 다시 인구유출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대학서열화 등으로 대학진학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화도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들(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이 여러 정부에서 제시되고 집행되었지만 추세를 되돌리지는 못하였음.
* 최근 ‘김포시 서울편입과 메가서울’과 같은 수도권 집중화를 강화하는 정책이 여당에서 버젓이 추진되고 있음. 수도권 집중화를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

1. **주요 과제**
2.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폐기와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

* 그린벨트 해제 기준 완화, 환경영향평가 예외 확대 등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의 원상복구
*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기초한 지역거점 메가시티 정책 추진 및 지역균형발전세 신설

1. **지방 공공 의료 서비스 확대**

* 광역단위 공공종합병원과 기초단위 거점 공공병원 설치

1. **지방대학 재정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 확대**

*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특별 재정지원, 지방대 출신 취업기회 대폭 확대

1. **지방거주 청년세대 주거 및 양육비용에 대한 공공 예산 지원 전폭적인 확대**

* 질좋은 공공주택 확대 정책, 육아 및 교육 비용 국가책임 원칙의 정책 도입

1. **참여연대 담당 부서: 참여자치연대 사무국 (02-723-5302)**

# 

# 

# 

# 

# IV. 민생과 안전 위기

# 

총선 시기만 되면, 너도 나도 ‘민생’을 앞세웁니다.

하지만 소득 단절로 인한 생계 위협, 천문학적 가계부채,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우리사회 전반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으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 생존권의 위협,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의 증가,   
노동3권 훼손과 사고와 과로로 위협받는 노동현장 등   
시민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정과세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재벌부자감세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복합적 위기 앞에 민생을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은 축소되고,   
조세 정책을 통한 재분배 효과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세제를 개편해 조세정의를 제고하고,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단초로 삼아 민생과 안전 위기에서 시민의 삶을 단단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 정책과제12. 복합 위기 대응 위한 소득보장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저출생과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다층적, 복합적 사회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기후위기 등 통제 불가한 외부 상황과 맞물려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임.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많은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수급 선정기준으로 직결되는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비공개로 개최되며 속기록조차 남지 않음.
* 한국사회의 핵심 소득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2008년 소득대체율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에 40%까지 축소될 예정임. 이는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모자람. 이번 정권에서는 국민연금의 확정기여형 전환, 소득대체율 상향 없는 보험료율 상향 등을 꾸준히 제기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도리어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급여적절성을 확보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노동자를 제도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료 지원에 있어서도 국가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함.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미국과 더불어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나라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에 대한 필요성을 시민들이 체감하였고, 정부 또한 상병수당 도입을 약속해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현재 2단계 시범사업까지 시행함. 그러나 지역과 대상에 제한이 있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이렇듯 노동자의 적정 소득과 아프면 쉴 권리는 법과 제도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더하여 사용자-근로자 관계에 속하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기여를 바탕으로 하는 기존 복지제도로 포괄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소득보장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2. 주요 과제**

1. **국민연금법 소득대체율 인상·플랫폼 기업 책임 부과·사각지대 지원 확대**

* 법정소득대체율을 2025년에 50%로 즉각 인상한 뒤, 이후 발휘되는 노후보장 효과 및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의 점진적 인상 등에 추가적으로 대응해야 함. 국고지원 등을 통하여 국가, 사용자, 가입자 등 다양한 주체의 재정 책임을 확대해야 함.
* 특수형태노동자를 비롯한 불안정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사실상 노동자인 지역가입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 원청과 플랫폼에 사업주 책임을 부과해야 함.
* 실업크레딧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을 적용하고 자녀 한 명당 최소 24개월을 보장하도록 전환하고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해야 함. 크레딧 재원을 전액 국고로 전환하고, 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하여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해야 함.
* 현실에 맞도록 기준 중위소득과 재산기준을 상향해야 함.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록과 속기록이 공개되어야 하며, 시민 방청권을 보장해야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수급자의 보장 수준을 강화해야 함.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60%수준으로 상향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포괄하고, 주거급여 수급 대상을 청년과 이주민으로 확대해야 함. 에너지 비용 지원대상을 ‘모든 수급가구’로 확대하고 제도 접근성을 높여야 함.

1. **고용보험, 상병수당 제도 도입 등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험 대비**

* 고용보험이 실질적인 소득보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불안정 취약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실업 인정, 자발적 이직·퇴사 등도 보장해야 함.
* 실업으로 인한 위기에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액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함.
*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 쉼이 곧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형식적 시범사업이 아닌 OECD수준의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도입해 소득을 보장해야 함.

**3. 참여연대 담당 부서: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 정책과제13. 과잉대출, 통신비 등 가계부담 완화

1. **현황과 문제점**

*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총액은 1,886조원에 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8%에 달함.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임계치인 80%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임.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3.7%로 OECD 26개국 중 네 번째로 높으며, 수치가 높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사회안전망이 튼튼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계채무자 문제가 특히 심각한 상황임.
* 코로나19 시기 저금리와 국제적인 과잉유동성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확대되었고 특히 자영업자 부채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 관련 대출이 큰 폭으로 상승함. 문제는 코로나 종식 이후 금리가 인상되고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높은 금리부담과 원금상환 압박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악순환에 빠짐.
* 이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임차인 전세대출과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DSR에 포함하도록 법에 규정하여야 함. 아울러 이 과정에서 한계채무자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림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채무조정 및 파산회생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하는 한편, 과도한 추심을 방지해야 함.
* 아울러 가계소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비,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에 대한 부담완화 정책이 필요함.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활동 증가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 온라인쇼핑, 비대면금융, 공공서비스의 온라인·자동화로 통신서비스의 저렴한 요금과 보편성, 공공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1. **주요과제**
2. **가계부채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불공정·과잉대출방지법」 제정**

*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모든 금융기관 및 대출 종류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및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계약 금지, 중도상환제재금 부과를 금지해 약탈적 대출 및 가계부채 부실화를 방지함.

1. **한계채무자 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채무자 회생법」 등 개정**

* 계약상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약정을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금에 대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화하고, 벌칙을 신설해 약탈적 대출을 방지함.
* 과도한 채권추심 금지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대부업체 외에도 은행, 저축은행, 카드 및 캐피탈, 신용정보회사, 추심업체 등 전금융권 채권추심으로 확대함.
*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에 대심주의를 도입해 채권자 이의가 없는 사항은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여 파산회생 절차와 시간을 단축하고, 파산에 따른 200여개 취업 및 자격제한을 삭제함. 또한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선고 전까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 담보권 설정·실행 등을 중지함.

1.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 통신서비스가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적인 성격이 높은 만큼 국민 누구나 저렴한 요금으로 보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2-3만원에 월평균 데이터의 50-100%(LTE 5~10GB, 5G 15~30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함.
*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3~5년 후에 가입자수, 수익 및 공급비용을 반영하여 요금을 재산정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용약관갱신제도를 도입함. 아울러 기지국 투자가 끝난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급원가 수준으로 통신비를 인하하는 반값통신비 제도를 도입함.

1.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경제금융센터,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정책과제14. 재벌대기업과 플랫폼에 시달리는 골목상권 살리기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경우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미비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OECD 국가 평균(17%) 보다 자영업자 비중(23.9%)이 월등히 높아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서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게다가 최근 노동자와 다름없지만 법적으로는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의 증가와 본사의 영업방침에 구속되어 독자적 사업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종속적 자영업자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특히 대형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진출과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한편, 가맹대리점 본사, 플랫폼 대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상가임대료 문제가 부의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1. **주요과제**
2.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와 가맹대리점 보호 강화**

*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도심 내 출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그 이하의 대규모점포 출점에 대해서도 상권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강화함.
*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의무휴업일도 유통산업발전법 상 주말로 명시하고 명절 당일에도 휴무하도록 함.
* 가맹대리점법 개정으로 계약갱신기간을 10년 이상 보장하는 한편, 과도한 인접지역 출점과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영업지역을 보호함.

1.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리모델링 등의 사유로 퇴거시 퇴거보상비를 지급하거나 재입점권한을 부여하도록 함.

1.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 정책과제15. 자산불평등 완화 위한 부자감세 철회와 공평과세 실현

1. **현황과 문제점**

*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2020년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은 GDP 대비 14.4%로 OECD 회원국 평균(23.0%)의 약 62.6%에 불과함. 2022년의 대규모 재벌부자감세로 인해 향후 5년간 6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2023년 54.6조원 규모의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함. 특히, 올해부터 재벌부자감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재정 악화도 우려됨.
*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고가 부동산 소유자와 다주택자를 위한 전방위적인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종부세 대상 축소(1세대 1주택 공시가격 9억→12억원, 다주택자 6억→ 9억원), 세율 인하(0.6~6.0%→0.5~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 중과 폐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하향 유지, 등록임대주택 합산 배제 등 부동산 세제 정책에 원칙과 방향이 크게 훼손 됨.
* 3월 발표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세금을 덜 내게 하거나 걷지 않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조세지출은 15조4천억원으로 전망됨. 윤석열 정부 이후 고소득자들의 조세지출은 2022년 12.5조원, 2023년 14.6조원(전망) 가량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가파름. 심지어 재벌대기업의 수혜분은 6.6조원이고 비중은 21.6%로 예상되어 재벌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금액의 증가세가 더 큼.
* 이처럼 ‘덜 걷고 덜 쓰는’ 데다 ‘걷어야 할 곳에 걷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은 비단 세수가 줄어드는 것 뿐 아니라,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임. 또한 한국 사회가 대규모 재정소요가 불가피한 인구위기,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등의 상황에 놓여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재벌부자감세는 복합적 위기 대응을 위한 복지 정책의 확대를 제약해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들이 소득을 투자, 고용 등에 쓰지 않고 쌓아두면 추가적인 세금을 걷는 투자상생협력세제(이하 상생협력세)가 2015년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음. 지난 2022년 국회에서 일몰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어 2025년까지는 유지될 예정이나, 경제계와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생협력세 폐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19년 미환류소득금액이 연평균 15.4%씩 증가하면서 해당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159개 기업 533억원에서 969개 기업 8,530억원으로 크게 확대됨. 500대 기업 / 공시대상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간 영업이익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노동자 임금, 연구개발 및 투자에 쓰이도록 투자상생협력세제를 강화하여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여야 함.

1. **주요 과제**
2.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공제금액 1주택자 9억, 다주택자 6억 인하) 규정 축소
* 2020년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계획대로 이행, 공시가격 산정 기준 및 절차 투명화, 시세 반영률 제고, 지역별·부동산 종류별 시세 반영률 격차 해소
*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축소
*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 폐지
* 임대소득 과세 강화(분리과세(2천만원→1천만원), 경비인정, 기본공제 축소)
*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강화(개발부담금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환수된 개발이익부담금의 사용 목적을 관련 법률에 특정하고, 부담금 징수 및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

1. **조세정의 확립과 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법인세 강화와 금융투자조세소득세 시행**

* 법인세 하위 구간 원상복구 및 상위구간 증세 (2억원 이하 1%p 인상,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은 3%p 인상, 200억원 초과 구간은 4%p 인상)
* 금융투자소득세 조속한 시행(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천만원)을 감안해 금융투자소득 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축소, 해당 금액보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실시

1.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증여세·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 증여세와 상속세 강화, 상속세 과세자 확대
* 상속세 일괄공제(5억→3억원), 배우자 공제(10억→6억원) 인하

1. **저성장·양극화·고령화 해결을 위한 ‘복지세’ 도입**

* 저성장·양극화·고령화로 증가하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세액에 10%를 부과하는 ‘복지세’를 신설.

1. **대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노동자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상생협력세제’ 강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를 개정하여 현재 2025년까지로 설정된 상생협력세의 일몰기간을 삭제하고,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실질적 대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함. 아울러 부과된 세액을 일반재정에 쓰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등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화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1. **참여연대 담당 부서: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금융센터 (02-723-5202, 02-723-5303)**

# 정책과제16. 노동자 권리 보장과 노동안전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노동형태도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현행 노동관계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일하는 시민 모두가 동등하게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데다, 안전을 위협받고 고용·생계 등 민생위기에 놓여 있음.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3년 8월 비정규직은 906만 명(임금노동자의 41.3%)이고 정규직은 1,290만 명(58.7%)임. 비정규직의 92.5%(838만 명)가 임시근로자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함. 2021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는 313만여 명(전체 노동자 17%)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 받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292만 명에 달하며 전년대비 약 72.2만명(32.9%) 증가함. 특히, 플랫폼 노동이 주업인 비중이 57.7%에 달하는데도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584건)으로 2022년 644명(611건) 대비 46명(7.1%), 27건(4.4%)이 감소함. 사고사망자 수가 2023년에 처음으로 500명대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대규모 건설현장과 소규모 제조업체에선 사망자가 증가함.
*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은 노동자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다양한 노동형태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하청·용역 등 비정규직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도 어려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고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임. 노조법을 헌법에 맞춰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함.
*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차등 임금지급이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등과 같은 노동자의 기본권·안전권 보장에 역행하는 경영계의 요구를 ‘민생 현장의 목소리’로 둔갑시킨 바 있음. 복합 위기 속에서 장애인, 이주민, 여성,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는 불안한 고용·소득, 불완전한 사회안전망, 낮은 임금 수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동관계법 적용 차별 등의 문제에 놓여 있음. 노동자 권리 보장과 노동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이 시급함.

1. **주요 과제**
2.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제11조 또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함.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동자성 증명 책임을 전환하여 일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사용자 정의규정에 포함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함.
* 상습 임금체불 엄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1. **모든 노동자의 생명 안전 보장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등 개정해야 함.
* 인과관계 추정 도입, 불법인허가, 부실한 관리감독 등을 한 공무원 처벌 도입, 직업성 질병 범위 확대,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1. **노동 3권 무력화,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 노조법 제2조(정의)를 개정하여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조직·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하여 영향력·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원청사업주를 모두 사용자로 인정해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영역에서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도록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함.
* 노조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을 개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가압류신청을 통해 노조의 활동을 압박하는 문제에 제동을 걸어야 함. 면책대상을 가압류까지 확대하고, 손배책임 제한 대상을 확대(모든 노동3권의 행사)하며, 손배책임 발생 요건 제한, 손배책임 주체 제한, 손배책임 범위를 제한(직접 손해, 상한 설정, 감면청구)해 노동3권 행사를 실질화함.

1. **참여연대 담당 부서: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52)**

# 

# 

# 

# 

# 

# V. 기후위기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위기

#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들은 디지털전환과 생태전환이라는  
이중전환의 길목 앞에 서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디지털전환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보여주듯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국가산업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고용의 불확실성과 허위정보 유포, 개인정보 활용, 민주주의 왜곡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전환이 기업과 자본중심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산업을 일으킬 혁신산업으로 과도하게 추진되는 반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전환은 한 없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탄소집약적인 산업구조 재편이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더디고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미온적입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이 몰고오는 사회적 위기에 맞서

22대 국회가 적극 나서야합니다.

# 

# 

# 정책과제17.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방지

1. **현황과 문제점**

*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되며 소수의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제는 대기업도 플랫폼 기업의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음. 대기업들이 독점과 불공정으로 훼손시킨 경제질서를 플랫폼 기업이 그대로 답습한 결과임.
* 플랫폼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수익화에 나서게 되는 승자독식 구조의 형성임. 택시 호출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아지자 수수료와 이용료 인상을 여러 차례 시도한 카카오나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기업들의 일방적인 요금인상에서도 시장을 독점한 플랫폼의 자연스런 수순이 요금 인상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음. 그밖에도 독점과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고착된 플랫폼 시장에는 다종다양한 불공정과 독점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음.
* 해외 주요국은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해 법제도를 마련하거나 시행 중임. 미국은 반독점 규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이른바 뉴브랜다이즈 운동 인사들을 경쟁당국의 책임자로 배치했고, 2021년 6월에는 일명 GAFA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하원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음.
* EU는 보다 강력하게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을 규제하고 있는데, 2019년 2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규칙을 시행한 데 이어 2024년 2월 디지털서비스법(DSA), 3월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됨. 특히, 디지털시장법(DMA)은 독점적 지위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이 독점적 지배력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함. 이러한 규제에 앞서 대표적 플랫폼 독점 기업인 애플은 최대 30%에 달하던 앱 결제수수료를 17%로 인하하고 인앱결제(애플 자체 결제시스템) 외 대체결제 사용을 허용함. 이는 독점적 시장에서 이를 규율하는 입법의 효과를 보여준 사례임.
* 하지만 이와 같은 세계적인 입법 흐름이 무색하게 우리의 플랫폼 시장의 독점과 불공정 규제 논의는 지지부진한 실정임.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사업 형태 앞에서 각종 갑질과 독점 피해가 켜켜이 쌓이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시장 전반과 우리 사회 전체로 향할 우려가 큼. 경쟁이 사라진 독점 시장에 남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몰락이기 때문임. 이에 플랫폼 시장의 진정한 혁신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과 독점·갑질 문제 근절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함.

1. **주요 과제**
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사업자들의 거래조건 개선 및 지위 강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함. 온라인판매중개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내 상품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등을 공개하고 준수하도록 제도화 해야 함. 또한 온라인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판매업자와 온라인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거나 프로모션 등을 진행할 때 온라인판매업자를 차별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함. 일방적인 해지·중단 등 부당한 거래거절의 규제, 노출 순위 결정 기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이용사업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 보장·데이터 독점 방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신속한 피해구제·분쟁해결 절차 도입, 이용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부여, 이용사업자단체 등의 단체소송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1. **일명 ‘선수와 심판 금지’와 플랫폼 시장 활성화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규제법 제정**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수합병 시 경쟁제한성 입증 책임을 전환하여 잠재적 경쟁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인수합병을 규제함.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방지하며, 자신의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함.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 및 차별적 취급행위를 금지함. 플랫폼 간 경쟁 촉진을 위해 플랫폼 사용자의 데이터를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이동하고 호환될 수 있도록 보장함.

1. **참여연대 담당 부서: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 정책과제18. AI 규제 위한 시민대안 입법

1. **현황과 문제점**

*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AI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폭발하면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개인화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이를 통해 비용효율적이고 일상생활을 간소화, 최적화할 수 있음. 그러나 인간노동력 대체, 소비자 대면서비스의 품질 저하, 조작, 차별적 관행 반복 강화, 자원낭비로 인한 환경문제 등 편익에 가려 실제로 AI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일선 학교와 독거노인 가정에 보급되는 인공지능 스피커에도 내장될 수 있는 인공지능챗봇이, 상담을 빙자해 수집한 민감한 카카오톡 대화 문장 백억 건을 무단으로 학습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함. 또한 이 챗봇은 여성·장애인·성소수자·흑인 등 인권 취약 계층을 혐오하는 채팅 서비스로 많은 사회적 비판과 우려를 샀음. 인공지능 자동 채용도구는 아무런 검증 없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퍼져가고 있지만 제대로 검증, 사후 관리 등을 하고 있는지, 예비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없는 등 모든 것이 불투명함. 인권과 정의를 지켜야 할 법무부는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2005년부터 출입국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얼굴정보 수억 건을 민간기업에 넘겼으며, 네이버쇼핑과 카카오택시는 자기 회사 이익을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하면서도 그 사실을 숨겼음.
* AI는 "다른 형태의 컴퓨팅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단일 모델을 학습하는 데 100개의 미국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할 수 있다"고 함.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 6 년 전에 전 세계 컴퓨팅의 에너지 수요가 10년 내에 전 세계 총 전력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음. 또한 데이터센터를 냉각하는데 사용되는 물사용량도 엄청나 AI의 개발, 학습, 배치, 사용으로 인해 물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픈AI의 LLM인 GPT-3을 학습시키기 위해 원자로 냉각탑을 채울 수 있는 양의 물이 필요했다고 함. 이 연구에 따르면 챗GPT는 최종 사용자와 기초적인 소통을 완료하는 데만 0.5리터의 물을 소비했다고 함. 이와 같이 AI는 탄소배출량과 물소비량 등에서 기후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지적이 있음.
* 자율주행차, 배달 로봇, 금융서비스 등 일상생활 곳곳에 인공지능을 장착한 자동화된 제품과 서비스가 점점 더 많아지는 등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에서 공공서비스,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면서도 AI의 위험성에 대한 규제의 필요에 대한 호응보다는 산업위축론에 따른 토종 기업 육성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더 우세한 상황임. 21대 국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법안들은 모두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민주사회에서 허용할 수 없는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도 없고, 고위험인공지능에 대한 기업의 의무, 책임성 등을 실효성있게 보장할 방안도 제대로 없음. 이에 적어도 우리 사회가 AI를 허용해서는 안 될 영역, 인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고위험 영역 AI에 책임성, 투명성 및 권리 구제 방안 등을 포함하는 AI규제법을 마련해야 함. AI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 없이 AI산업 발전도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임.
* 유럽연합의 AI법안을 비롯하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등 최근 국제적 흐름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시대에 인공지능 기술의 위험성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규제 정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권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1. **주요 과제**
2.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AI법 제정**

*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 금지되는 인공지능의 정의를 규정
*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 및 책임성, 투명성 의무 규정 및 실효성 담보 방안 마련
* 이용자와 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리 침해시 구제절차의 마련
* 인공지능 개발 및 출시 전에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공지능의 기능 또는 활용 범위의 변경 시에도 재평가 실시
* 적정한 거버넌스 구축 : 인공지능 감독·규제 업무는 산업진흥 부서가 아니라 제3의 독립적인 기관이 담당

1. **참여연대 담당 부서: 공익법센터 (02-723-0666)**

# 정책과제19.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책임 및 거버넌스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해 마련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10조에 의거하여 2050탄소중립, 2030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를 목표로 범부처차원의 방향, 역할, 과제를 담은 계획임.
* 계획은 중장기·부문별 감축목표를 담고 있으나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부문의 탄소감축 목표치가 14.5%→11.4%(800만t 증가) 기존 대비 감소했고, 소형모듈원전(SMR)이나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등에 의한 비현실적인 감축분이 포함되기도 함. 국가기본계획이 발표한 향후 5년 소요재정(89.9조 원)에 대해 구체적인 추정근거가 없다는 것이 국회 기후특위를 통해 밝혀진 바 있음. 나아가 인권위는 기본법과 그 시행령의 2030 NDC 40%라는 목표 자체가 과소하고 각년도 감축목표가 규정되지 않아 시민의 기본권 훼손, 미래세대에 대한 감축부담을 전가한다며 헌재에 위헌의견을 제출하기도 함.
* 반면, 정부는 현재의 목표에 대해 “도전적인 상황”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기후위기의 시급성은 매년 강조되고 있는데 목표나 체계적인 이행 등은 미흡함. 이에 국가의 책임과 역할도 강화되어야 함. 또한, 감축을 미래에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상한 조치를 통해 목표치를 상향하고 그에 따라 탄소중립계획 전반을 수정, 적극적인 이행에 나서야 함. 이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기재부-산업부-환경부-보건복지부 등 기후대응의 핵심부처들을 통괄하는 가칭 기후부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신설하고, 그에 걸맞게 국회 기후전담 상임위원회도 마련되어야 함.
* 또한, 국가의 전반적인 탄소감축 및 적응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거버넌스 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특히 기술관료 주도성, 불투명성, 일방성 등이 그것인데, 지난 1월 탄녹위가 제출한 이행점검 보고서 과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문제제기(Youth워싱, 촉박한 일정, 불투명한 소통 등)가 보도되기도 함. 또한, 이행점검 이후 조치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감축목표에 미달하는 부처에 대한 시정조치가 부처 자율성에 의지하는 구조인 것도 큰 문제임. 거버넌스 개선과 권한과 역할에 대한 점검·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1. **주요 과제**
2. **책임있는 NDC목표 수립 및 이행**

* 책임을 미래에 전가하지 않도록 목표치 재수립 및 상향, 적극적 이행조치와 책임 있는 점검체계 마련
* 부적절한 기술(소형모듈원전-SMR, 핵발전), 불확실한 기술(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에 의한 탄소감축분, 국외 감축분 등을 제외한 감축목표 및 탄소감축 시나리오 재수립

1. **정부조직 개편 및 국회 상임위 신설**

* 기후에너지정책 부문을 책임있게 집행할 정부조직 신설
* 책임있는 국회 논의를 위해 비상설 기후특위 대신 법률안 심사·처리권, 예산심사권을 부여한 기후전담 상임위원회 신설(국회법 개정)

1. **탄중위 거버넌스 및 책임성 개선**

* 탄중위 위원 구성에 있어 기업인과 기술관료 중심에서 벗어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에 개방성을 높이고 전체 심의·의견 과정에 대한 투명성·접근성 개선
* 탄중위의 국회보고 의무 강화(기본법 78조)
*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부처별 시정조치 책임 강화

1. **참여연대 담당 부서: 정책기획국 (02-723-0808)**

# 

# 정책과제20. 공공중심 에너지 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

1. **현황과 문제점**

*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탄소배출 감축인데, 그 중 에너지부문은 가장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 영역(온실가스 배출의 86.8%)임. 이에 따라 에너지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현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상당히 더디고 공공의 책임있는 방향이 아닌 민간주도(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90%)로 진행되고 있음. 게다가 한전 산하 발전공기업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우회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음. 또한, 기업들에 의한 가스 직도입이 확대되고 재생에너지 부문은 전력구매계약 PPA(Power Purchase Agreement)가 도입되어 점차 시장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게다가 해양풍력, 영농형 태양광, 양수발전 등에 대한 투기자본의 진입, 지역·주민갈등 등이 벌어지기도 함. 이에 더해 에너지전환의 공적주체라 할 수 있는 한국전력은 누적된 적자 문제에 시달리며 민영화 위협을 받고 있고 더욱이 전력판매시장 등 또한, 요금문제와 더불어 개방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임. 에너지요금 문제는 매년 ‘폭탄’같은 표현 속에 정치공방으로 이어지지만 제대로된 해결책은 요원한 상황이고 현재는 공기업(한전, 가스공사)이 그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 할 수 있음. 이에 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반영한 에너지요금의 합리화도 시급한 과제임.
* 에너지는 공공재화인 만큼, 이윤을 위한 시장에 맡길 수 없으며 현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또한, 공공을 중심으로 이행되어야 함. 특히 시설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재생에너지(대규모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건설 등) 확대를 민간자본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적 주체로서 국가나 공공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하지만 현재 한전으로부터 분리된 산하 6개 발전공기업은 경쟁체제에 몰려 있어 통합적·공공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공주도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절실함.
* 또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의 문제 특히, 화석연료발전소 노동자들, 전기차로의 전환에 따른 내연기관 부품사 및 관련업종 노동자 등의 고용과 안정적 삶의 보장, 전환 논의 과정에 있어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하지만 지난해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지원법에는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 빠졌고, 전환 과정의 노동의 참여 또한 담지 못한 한계가 있음. 이에 전환으로 좌초가 예상되는 산업부문의 노동자들의 권리와 참여, 일자리 등이 보장되도록 법·제도마련이 시급함.

1. **주요 과제**
2. **공공주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가역할 강화**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국가의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등 역할 강화
* 재생에너지 확대에 목표를 둔, 시민과 노동자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발전공기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 **에너지 비용 합리화 및 취약계층 지원**

* 가스나 전기 등 에너지 비용 합리화와 취약계층 비용지원

1.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 참여 보장**

* 노동전환 과정 중 현행법(고용안정지원법) 내 최소한의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노사동수 구성, 나아가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넘어 노동자의 주체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1. **참여연대 담당 부서: 정책기획국 (02-723-0808)**

# 

| 참여연대 정책자료  **22대 총선 정책과제**  **- 한국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 극복 위한 20개 정책과제**  발행일 2024. 3. 18.  발행처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담당 이미현 국장, 김건우 팀장 02-723-0808 pp@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온라인 회원가입](https://bit.ly/GoPSPD)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http://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 채널 안내(SNS·뉴스레터·보도자료 수신 등)](http://bit.ly/mediaPSPD) |
| --- |

1.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footnote-ref-0)
2. 국가승인통계 2022년 공공의료기관 현황, 2023.10.31.,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footnote-ref-1)
3. 영국 100%,프랑스 45.0%, 미국 23.9%, 일본 22.8% OECD Health Statistics, 2021, OECD [↑](#footnote-ref-2)
4.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시도/시/군/구), 2023.02.28, 통계청 [↑](#footnote-ref-3)
5.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2023.01.11.,국민건강보험공단 [↑](#footnote-ref-4)